

의안번호	2216005
의 퇴 인	김동아 의원
회 답 일	2026. 1. 21.
추 계 번호	26F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설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의8(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하여 증여세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 － 승계지원 등록기업: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에 기업 승계를 신청한 기업 ※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피승계자 및 승계자 요건: (피승계자)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한 기업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60세 이상 증여자(승계자) 피승계자로부터 중소기업을 승계(수증)하는 18세 이상 자연인, 비영리법인, 조합 － 특례내용: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5%, 200억원 초과 10%의 저율과세 부과 ※ 동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은 동 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음	
2	안 제30조의9(승계지원 등록기업 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 유예)	○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특례를 신설 － 대상: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자(수증자) － 특례요건: 승계자는 납부유예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 ※ 납부유예 금액의 범위, 담보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시행령 규정사항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0조의8(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2	안 제30조의9(승계지원 등록기업 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 유예)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증여세 납부유예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증여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30조의8 및 제30조의9 신설)

-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업승계 촉진 체계의 구축을 위해 승계지원 기업의 등록절차, 요건, 승계 이후 사업재편 및 고용유지 원활화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
-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자(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증여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30조의8)
 - － 적용대상: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에 기업승계를 신청한 승계지원 등록기업
 - ※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 －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요건: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피승계자) ① 60세 이상 자연인(증여자)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경영 ③ 기업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승계자) ① 18세 이상 자연인(수증자), 비영리법인, 조합 ② 피승계자로부터 중소기업의 주식, 출자지분, 사업용 자산을 증여받고 해당 기업을 직접 경영
 - － 특례내용: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5%, 200억원 초과 10%의 저율과세 적용
 - － 동 특례는 적용대상이 일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30조의6(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 ※ 또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적용되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와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표 1]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구분	기업승계 과세특례 (동법 제30조의6)	승계지원 등록기업 과세특례 (안 제30조의8)
특례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승계지원 등록 중소기업
특례적용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5% 200억원 초과 10%
적용한도	- 증여자 경영기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기준 차등적용 * 증여자 경영기간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법률에 규정 없음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경영기간 요건) 다음 ①, ② 중 하나를 만족 ① 기업영위기간 중 50% 또는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② 증여일 이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 (지분요건) 증여자 및 특수관계인이 10년 이상 기업의 20~40% 지분 보유 * 상장기업: 20%, 비상장기업: 40%	- 60세 이상 * 수증자의 친족, 제3자 모두 가능 - (경영기간 요건) 10년 이상 - (지분요건) 50% 이상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인 증여자의 자녀 - 증여세 신고기한내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 이후 3년내 대표이사 취임	- 18세 이상 - 증여 이후 승계기업 직접 경영
사후관리	- 수증자는 증여일 이후 5년간 기업 영위 - 수증자 기업지분 유지	- 수증자는 증여일 이후 5년간 사업 영위 - 수증자 기업지분 50% 이상 유지 - 정규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이 증여 이전 2년 평균의 80% 유지
비고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창업기업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자(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증여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30조의9)

- 적용대상: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자

※ 승계지원 등록기업 및 승계자 요건은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며, 안 제30조의8의 요건과 동일

－ 특례내용: 승계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 단, 승계자는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득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함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추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승계지원 등록기업 증여재산의 저율과세 특례 또는 납부유예 특례 신설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승계자(수증자)의 수증건수, 증여세 과세가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기초자료가 되는 기업승계 관련 자료 등이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개정안에 따른 특례신설시 적용되는 증여건수 및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등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저율과세 또는 납부유예가 발생할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참고로, 안 제30조의8과 일부 적용대상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행 동법 제30조의6(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도별 적용건수 및 재산액은 다음과 같음

[표 2]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황 추이: 2020~2024년

(단위: 개,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	222	267	410	314	508
증여재산가액	3,170	4,025	7,458	4,217	9,729

주: 과세특례에 따라 과세미달된 인원 및 금액 포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Ⅲ. 부대의견

□ 개정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도 수정될 수 있음

※ 의안번호 2216006, 발의일자: 2026.1.13.

-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지원기관, 기업승계의 피승계자(증여자) 및 승계자(수증자) 요건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도 수정될 수 있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